SEEKING FOR THE BEST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의무사항

Mar 23. 2026

공인노무사 황 지 호
공인노무사 서 강 준

노동법률자문/인사노무컨설팅/경영지도

개요

1. 노동 관계 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여러 의무 부과

-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터 대다수 규정이 적용
- 그 외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사항 정리
- “상시 근로자 수”는 항상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아닌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 법령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니 유의

2. 관련 법령 예시

- 아래 법령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정책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등

1.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 제15조	50, 100 300인 이상	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농업, 어업 등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각 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50인 이상 500인 미만	특정 사업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500인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50인 이상 500인 미만	광업,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등 사업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500인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산업보건의	법 제22조	50인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안전보건관리 규정	법 제25조	300, 100인 이상	농업, 어업 등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그 이외의 사업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법 제62조	100인 이상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법 제19조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인 이상 선임
휴게시설 설치	법 제128조의2	10명 이상 20인 미만 (또는 20인 이상)	1.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2. 전화 상담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직종은 상시 10인 이상 2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법 제24조	5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 상시 50인 이상 2.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상시 300인 이상 3. 시행령 [별표 9] 외의 사업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안전관리 위탁	법 제17조	300인 미만	건설업 외 사업 중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노사협의회	법 제4조	30인 이상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고충처리위원	법 제27조	30인 이상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3. 고용정책 기본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법 제15조의6	3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결과 제출	시행규칙 제4조의2	50인 이상	법 제2조의2 제6항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시행규칙 제4조의2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의무	법 제28조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법 제3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고용의무를 적용)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부담금 납부	법 제33조	100인 이상	1.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	50인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

5. 영유아보육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직장 어린이집 설치	법 제14조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 집을 설치 해야 함.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법 제36조	300인 이하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위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3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음.

7. 남녀고용평등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령 제3조 제4항	10인 미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 제출의무	시행령 제4조 제2항	300, 5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시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외 : 상시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의비율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 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8. 고령자 고용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시행령 제14조	3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적립금 운용위원회	법 제18조의2	3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적립금 운용계획서	법 제18조의2	3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함.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적용	법 제3조	30인 이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함.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	근거법령	상시 근로자 수	내용
안전보건 전담 조직	시행령 제4조	5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합쳐 3인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